

# 보 도 자 료

## 애완견의 목줄착용으로 인한 다툼에서 비롯된 폭행 사건

[2017헌마882 기소유예처분 취소]

### [ 선 고 ]

헌법재판소는 2019년 6월 28일 관여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의견으로,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청구인이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보아 피청구인이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이 자의적인 검찰권의 행사로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다는 취지로 청구인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인용]



2019. 6. 28.

헌법재판소 공보관실

## □ 사건개요

- 청구인은 2017. 5. 22. 목줄을 하지 않고 개를 풀어놓은 피해자에게 “개 목줄을 하고 다니셔야죠.”라고 말하였고, 이로 인해 청구인과 피해자가 언쟁을 벌이게 되었다. 언쟁 중 피해자는 “뭐야! 이 새끼가”라고 하면서 달려와 양손으로 청구인의 목을 2~3분 줄라 풀숲으로 쓰러뜨린 후 청구인이 일어나자 다시 오른쪽 주먹으로 청구인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피청구인은 피해자에 대하여 상해 혐의를 인정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함과 동시에 청구인 역시 피해자의 유형력 행사에 대하여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피해자를 폭행하였음을 인정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기소유예처분을 하였다.
- 이에 청구인은 위 기소유예처분이 자신의 행복추구권 등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 결정주문

- 피청구인이 2017. 6. 27. ○○지방법원 2017년 형제12266호 사건에서 청구인에 대하여 한 기소유예처분은 청구인의 평등권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 □ 이유의 요지

### ●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가 인정되는지 여부

- 청구인은 일관되게 자신은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였을 뿐 멱살을 잡거나 유형력을 행사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있는 반면, 피해자는 청구인이 자신의 멱살을 잡아 밀고 당기면서 같이 실랑이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다. 그런데 피해자가 청구인에게 사과를 받아주지 않으면 자신도 쌍방으로 몰고 갈 수밖에 없다고 말한 녹취록이 존재하는 등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보인다.
- 또한 피청구인이 유형력 행사의 증거로 제시하고 있는 CCTV 영상 역시 먼 곳에서 해충포집기에 의해 가려진 채 촬영되었고 화질도 좋지 않아 이를 통해 청구인이 멱살을 잡는 등 유형력을 행사하였는지, 유형력을 행사하였다면 청구인과 피해자가 서로 어느 부위를 어떻게 때렸는지를 영상을 통해 식별하는 것

이 불가능하다.

- 이처럼 청구인의 유형력 행사를 인정할 증거가 없음에도 피청구인은 폭행 혐의가 인정됨을 전제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기소유예처분에는 그 결정에 영향을 미친 중대한 수사미진의 잘못이 있다.

## 결정의 의의

- 최근 애완건의 목줄착용과 관련한 다툼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 사건은 이러한 다툼이 실제 형사사건으로 확대된 사건이다.
- 이 사건은 애완건에게 목줄을 착용시키지 아니한 피해자가 청구인을 먼저 폭행하였고, 청구인이 이에 대항하여 유형력을 행사하였다고 인정할만한 증거가 없음에도 청구인의 폭행 혐의를 인정하여 이루어진 기소유예처분을 취소한 것으로, 기소유예처분을 함에 있어 비록 사안 자체가 가볍다고 하더라도 피의사실을 인정함에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하며 현출된 증거가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면 단순히 재량적, 심정적 판단으로 혐의를 인정할 것이 아니라 무죄추정의 원칙 및 형사 증거법의 원칙에 따라 피의사실 인정 여부를 판단하거나 추가적인 조사를 통하여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헌법상 원칙에 부합하는 것임을 다시 확인한 점에 그 의의가 있다.